

4.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수련 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를 수련 및 수련 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세부전문 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세부전문 의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수련병원으로 한다.
3. ‘세부지도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 의 가운데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임의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세부지도전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4. 세부지도전문의 자격 요건은 소아심장학 세부전문 의 자격을 취득하고 수련병원에서 최소 1 년 근무를 마친 자이어야 하며 세부지도전문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지도전문의 자격은 세부전문 의 인정기간과 동일하며 세부전문 의 자격 갱신 시 세부지도전문의 필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갱신받아야 한다.

[제 3 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 의로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 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 기간

1. 수련 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 의 자격 취득 후 1 년 이상으로 한다. 군 복무(또는 군 대체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연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 월 1 일부터 다음 해 2 월 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공중보건의 근무 등)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 복무를 마치는 당해 년도 5 월 1 일부터 다음 해 2 월 말 까지로 한다.
3. 세부지도전문의 의 부재 시 수련 기간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부재 기간이 3 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부재 기간이 3~6 개월: 세부지도전문의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고, 전임의 파견 수련 증명서(별지 서식 14-2 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재 기간이 6 개월 이상: 세부지도전문의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 증명서(별지 서식 14-1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 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지도전문의의 수와 같거나 그 이내로 한다.
- 2. 소아청소년 심장 내과학 분야 전임의 정원과 소아청소년 심장 외과학 분야 전임의 정원을 각 분야의 세부 전문의 수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제 6 조] 수련 목표 및 내용

- 1. 소아청소년 심장학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진료, 타과에 대한 자문, 타 의료 인력과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 사회의 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2. 최소 1 년 동안의 전임의 수련 기간 동안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중 필수 교육을 포함하여 10 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시험 응시 직전 2년간 2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수련 내용은 별표 2 와 같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1. 수련병원장은 제 5 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한다.
-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 1. 수련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는 아래의 기록들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2) 전임의 수련 기록부 (별지 제 4 호 서식)
 - (3) 전임의 학술집담회 참석 기록부 (별지 제 5 호 서식)
 - (4) 전임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2. 제 1 항의 제 2 호, 3 호, 4 호의 서류는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세부지도전문의 및 전임의 보고

1. 수련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 월 말까지 전임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당해 년도의 전임의 명부 (별지 제 6 호 서식)
- (3) 직전 년도의 수련 이수자 명부 (별지 제 8 호 서식)
- (4) 세부지도전문의 명부 (별지 제 9 호 서식)

2. 수련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 보고를 한 후에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겸직 및 중복 수련 금지

- 1.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다른 분과전문의나 세부 전문의 전임의로 중복 수련을 할 수 없다.
- 2. 군인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자는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1 조] 수련 병원의 신규 지정

1. 신규로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는 세부 전문의 수련 병원 지정 신청서(별지 제 10 호 서식)와 세부 전문의 수련 병원 실태조사서(별지 제 11 호 서식)를 작성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에 당해 전년도 8 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한 수련 병원 지정서를 당해 전년도 10 월 말까지 교부한다.

2. 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서와 함께 현지실사를 근거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수련 병원의 지정 기준

-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수련병원이거나 심장전문병원으로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와 적절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수련 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3. 수련 병원의 인정 기간은 5 년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 병원 지정 기준 상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즉시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정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 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수련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 병원의 정기적 자격 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 5 년마다 수련 병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수련병원 지정 3 년이 되는 해에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심사: 지정 만료년도의 전년도 8 월말까지 세부 전문의 수련 병원 실태조사서(별지 제 11 호 서식) 대로 진료 실적,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세부지도전문 의 수, 전임의 현황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련 병원에 대하여 세부 전문의 수련 병원 지정서(별지 제 12 호 서식)를 갱신하여 10 월말까지 교부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도 있다.
2. 중간점검;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고 3 년째되는 해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기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시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 뒤 추후 정기심사에 반영하지만 중간점검 결과로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제 15 조] 수련 병원의 비정기적 자격 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은 해당 수련 병원의 자격 심사를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한달 전에 해당 수련 병원에 공지하여 수련 병원 실태조사서를 받아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수련 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4 조의 내용으로 심사하되 현장 검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수련 병원 자격 내용 (전임의 지원)의 변화로 인해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은 동일한 절차로 심사하되 현장 검증은 생략할 수 있다.

[제 16 조] 수련 병원 지정의 취소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수련 병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 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기심사 혹은 비정기 자격심사에서 수련 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 수련 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 임용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4. 수련 병원 자격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 할 때.

지정이 취소된 수련 병원의 장은 책임자에게 즉각 전임의 이동 수련을 지시하고 해당 병원의 전임의 수련을 종료하도록 한다.

[제 17 조] 수련 병원 재지정

지정이 취소된 수련 병원이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하면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수련 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1 조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차 개정된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3차 개정된 규칙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5. 4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6. 5차 개정된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